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1일, 박수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6.3.17.)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3.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중 “은행장”을 “임원”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가 만료된 <u>은행장은 후임자가</u> <u>임명될 때까지 계</u> <u>속하여 직무를 수</u> <u>행한다.</u>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u>임원</u> -----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략) <u><신 설></u>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u>